금산군의회
GEUMSAN COUNTY COUNCIL

2024. 9. 5.(목)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- 제3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
의안 검토보고서

검토안건

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

행정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이금성

금산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

1. 회부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84호

○ 제 출 자 : 금산군수

○ 제 출 일 : 2024. 8. 22.

○ 회 부 일 : 2024. 8. 22.

2. 제안이유

○ 금산군 공설봉안당은 종합장사시설로서의 시설 여건이 미흡하며, 사무실이 협소하여 인력의 상주 근무 및 시설관리의 어려움 등 직영운영의 한계 존재

○ 이에,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보유한 적격 기관에 위탁하여 비용 절감, 이용자의 편의성과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, 전문성,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위탁시설 현황

시설명	위치	시설규모 (㎡)	봉안가능기수		설치년도
			무연	유연	
금산군 공설봉안당	복수면 복수로 1015-71 (재단법인 평화공원 내)	225.54㎡ (봉안시설 198㎡)	1,152	1,920	1997년도

○ 위탁내용 : 금산군 공설봉안당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

○ 재계약기간 : 3년(2025. 1. 1. ~ 2027. 12. 31.)

○ 위탁업체 선정방법 : 현재 수탁자 대상 재계약 심사

- 심사대상 : 現 수탁자 (재)평화공원 대표 김규형

※ 현재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4. 12. 31.(3년)

- 심사방법 : 위탁운영 성과평가, 위원회 심의 결과 등 검토 심사

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연간소요액 : 49,285천원(군비 49,285천원)
  [인건비 36,735천원 / 운영비 12,550천원]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9조(장사시설 등의 위탁·운영)
- 「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」 제2조(정의), 제5조(위탁 대상사무), 19조(재계약)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 금산군 유일의 공설 장사시설인 금산군 공설봉안당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「금산군 사무위 위탁 조례」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금산군 공설봉안당은 지난 1997년이래 시설의 증축 없이 지속적인 봉안으로 현재 70%의 봉안율을 보이는 등 시설여건이 미흡하여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보유한 적격 기관에 위탁하여 비용절감 및 지속적인 서비스, 사무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한 효율적 운영을 감안할 때 민간 위탁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다만, 최근의 장사 문화가 매장형보다는 화장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사시설 증축이나 별도의 장사시설 설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